

## 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뀌는 사항



### ▶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신설

- 개인사업자도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.

(대상자) 성실신고확인대상자, 전문직 업종 사업자  
 (대상차량)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차량  
 (미가입시) 관련비용의 50%만 필요경비 인정  
 (적용시기) 2021.1.1.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

### ▶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

-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금액을 종전 1,0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.

(적용시기)  
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# ▶ 임차료 및 처분손실 이월공제 방식 조정

- 임차료(리스·렌탈) 및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.

(종전) 1~9년차에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10년차에 전액 공제



## 주요 질문과 답변



### ▶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&A

**Q**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비용특례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인가요?

**A**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임차(리스·렌탈)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**Q**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가요?


**A** 연간 1대당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용보험(개인은 2021년부터 가입의무)에 가입하면 전액 비용이 인정되며  
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**Q**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**A**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'차종,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, 업무용 사용거리, 관련비용' 등을 기록한 「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」를 제출해야 하고,  
 운행기록부는 신고시 제출의무가 없지만 과세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 ▶ 기타 궁금한 사항은

- 126번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☺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⇒ 상담 ⇒ 인터넷 상담하기

국세상담센터  
 전국 어디서나 ☎126  
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한번에!



정부혁신  
 보다 나은 국세청



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뀌는  
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꼭 알아두세요!



##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?



### ▶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한 이유

-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, 사적·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'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'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### ▶ 주요 내용

-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·기준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여야 합니다.
  -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
  - 2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 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
  - 3 감가상각비, 임차료(리스·렌탈), 처분손실 등의 연간 비용 인정한도를 두고 있습니다.

####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

##### 사적사용

전액 비용 불인정

##### 사적·업무 혼용

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<sup>1)</sup>

##### 업무전용

전액 비용 인정<sup>2)</sup>

- 1) 전용보험 + 운행기록부상 업무용사용 비율 해당액
- 2) 전용보험 + 연간 비용인정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공제



##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I



### ▶ 적용 대상자

-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입니다.

### ▶ 업무용승용차의 범위

-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(리스·렌탈)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입니다.

**(제외대상)** 운수, 자동차판매·임대, 운전학원, 경비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, 장의용차,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자동차, 경차 등

### ▶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

- 감가상각비, 임차료(리스·렌탈)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차세,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·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.

### ▶ 업무전용자동차보험

-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미가입시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
- 개인사업자는 현재 가입의무가 없으나, 2021.1.1.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,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 가입의무가 생깁니다.(단 승용차가 1대인 경우 제외)

**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?** 기업의 임직원, 계약에 따라 운전하는 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

##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II



### ▶ 운행기록부 작성·비치

- 비용을 업무사용비율\*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과세 관청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운행기록부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를 말하며, 운행기록부는 국세청 고시 제2019-16호(법인), 제2019-17호(개인)에 따라 작성

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,500만원 (중전 1,000만원) 한도 내에서는 비용이 인정됩니다.

### ▶ 업무용 사용거리·금액

- '업무용 사용거리'는 제조·판매장 방문, 거래처 방문, 출·퇴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.
- '업무용 사용금액'은 '관련비용 × 업무사용비율'로 계산합니다.

### ▶ 감가상각비·임차료 및 처분손실

- 감가상각비, 임차료(리스·렌탈) 및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,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속 이월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.

### ▶ 사적사용한 경우 세금부담

- 법인의 사적사용금액은 그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므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
-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